
현장논단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김영곤
고려대강사

〈논문요약〉

현재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7만 대학 강사를 포함한 13만 5천 비정규교수는 교원지위가 없다. 강사는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이래 신분, 발언권이 없다. 비정년트랙 등 비정규교수도 교원지위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근기법상 노동자 성격도 2007년 대법원 판결로 뒤늦게 정해져, 대부분 대학에서 계약, 4대보험, 연구실, 연구비 등이 없다. 연 강의료는 2008년 평균 주 4.2시간에 487만 5천 원이다.

이런 사정은 비정규교수의 연구·강의·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학문의 자유에 입각한 독립적 강의 연구 교육이 불가능하다. 강의실에는 질문과 대답, 비판과 토론이 사라지고 일방적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존재한다. 이것은 대학 강의의 질을 저하시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비정규교수는 1988년 노조를 결성하고 교원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현재까지 600일 넘게 농성 중이다. 대학생도 교과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한다.

17대 국회에서 3당 의원이 강사를 교원 범주에 넣는 고등교육법 개정

안을 각기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대학의 반대가 심하고 교과부도 해결을 기피해 결국 폐기했다. 18대 국회에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강사의 역량과 의지에 한계가 있고 전임교수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학 강사가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고 대학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이 학습권을 회복하고, 학부모가 교육권을 회복하고, 사회가 지식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동 투쟁해 교원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주요어: 강사, 비정규교수, 교원지위, 고등교육법, 국가폭력, 대학교육, 학습권, 교육권, 학문의 자유, 한경선

1. 들어가며

필자는 대학생 때 삼선개헌·교련을 반대하다 위수령 때문에 제적당했다가 1975년 복학했다. 그런데 유신에 반대하다가 파면당한 비판적인 교수의 빈자리를 시카고학과로 채우고 학생회 자리는 학도호국단으로 채웠다.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학의 앞날을 막연하지만 불안하게 느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비정규교수¹⁾ 제도가 출현해 32년 동안 대학교육을 무너뜨렸다. 박정희 유신정권이 비판적인 지식인을 탄압하려고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사회적

1) 비정규교수는 대학 강사를 포함해 연구교수, 강의교수, 비정년트랙 등 고등교육법에서 법적 신분이 없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으로 인식이 덜돼 지금까지 잔존하는 유신독재의 ‘잔인한 유산’이다.

대학생의 강의평가에 따르면 전임교수, 비정년트랙, 시간강사는 거의 차이가 없다. 시간강사가 평가가 나은 경우도 있다. 또 시간강사 → 전임교수에 이르는 평가 승진의 합리적인 과정도 없다. 양자의 관계는 그저 봉건적인 차별 관계일 뿐이다.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연구와 강의를 평가받고 이에 따라 전임교수가 되는 승진 절차를 마련할 경우, 한경선 비정규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제기한 비정규교수의 신분불안과 교수임용 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한경선 「유서」 2008. 2. 27).

대학 강사가 1988년 전국강사노동조합협의회(전강노)를 조직해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 문제를 제기한지 20년이 넘었다. 17대 국회에서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각기 고등교육법(이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비정규교수가 국회 앞에서 3년째 농성하고, 2008년에만 대학 강사 2명이 자살하고, 언론이 고발하고, 대학생 대학원생 이 나서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는 이 제도 개선에 참여한 전명혁(1992), 홍영경(2008), 김동애(2002; 200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2007), 이남석(2004), 김용섭(2008) 등이 있다. 또한 자신의 전공에 비추어 접근한 신정완(2003), 정성기(2003), 조우영(2007), 백삼균 외(1999), 심경호 외(2001), 강병운 외(2004), 박인우(2008), 진일상(2008) 등의 연구가 있다. 한경선의 「유서」는 주요 자료이다. 대학생 박종주(2009)는 ‘교원’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고 한다. 미디어 자료로는 MBC PD수첩(2002.6.10), KBS 2TV 추적60분(2008.4.16) 프로그램이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 자료로 이주호(2006)가 있는데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따르는 부수예산을 계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연구는 매 시기마다 비정규교수 문제의 인식과 해결 노력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 글들은 대체로 비정규교수의 현실, 고등교육법 개정의 당위성을 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교수 제도의 발생과 그것

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원인 분석과 추진 방안의 제시는 부족한데, 최근 대학 강사의 국회 앞 농성 600일째를 맞아 출간한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김동애 외 지음 2009)은 비교적 심층 접근을 시도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행하며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교수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경제적 의미, 그리고 교원지위 회복 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실현 방안을 밝힌다.

2. 비정규교수 제도의 발생과 영향

1) 비정규교수 제도의 발생

먼저 대학 시간강사가 1977년 교원지위를 박탈당했지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의 구조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우리 사회의 대학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그런 경우다. 경성제국대학은 친일 세력으로 한국 지배 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 정국에서 친일하던 대학 설립자가 그대로 온존했고, 서울대는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친일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1951년 농지개혁도 대학은 교육투자를 이유로 대상 면적의 절반을 면탈하였다(손인수 1994, 348). 1950년대에 사람들은 대학을 우골탑이라 불렀다. 대학은 개발독재 아래서는 산업노동자를 양성 공급하며 독재와 유착했다. 1977년 유신독재는 이를 비판하는 교수는 파면시키고, 학생은 제적시켜 군대로 보내고, 시간강사에게서 아예 교원지위를 빼앗아 ‘일용잡급직’으로 만들어 거리로 표류시켰다.

헌법 31조 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1949년 교육법 제정 이래

강사는 교원이었다. 강사는 전임교원이 자리를 비워 강의를 대신하는 경우나 특수한 연구자를 초빙하는 데 한정했다. 그러나 베트남 종전 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만들어 종신 집권을 기도했다. 1977년 교육법 75조를 개정해 비판적인 젊은 대학 강사를 교원 범주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 뒤 전두환 정권 아래 졸업정원제를 거치면서 시간강사는 이 대학저 대학으로 떠도는 ‘보따리장수’, 강의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대학가의 유령’으로 일반화했다.

‘학원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우선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의 시대적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자.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나고, 1975년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1975년 7월 9일 사회안전법 민방위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으로 4대 전시입법을 통과시켰다. 사회안전법은 일체의 조선상상범보호관찰령과 비슷한 법이었다.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교수 재임용제의 신설을 담은 것으로, 체제에 비판적인 교수의 재임용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 교수 재임용제는 1976년 2월 28일 처음 실시해, 전체 교수의 4.7%인 460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조희연 2007, 187).

대학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학원(대학)’의 모든 서클활동은 금지하고, 일반 수업을 제외하고는 봉사활동 등 일체의 학생단체 활동은 학도호국단 활동으로 귀일했다(손인수 1994, 193). 백골단이라는 사복형사 전투경찰경찰기동대 중앙정보부 기관요원이 대학 안에 상주해 학생의 동태를 감시하고 시위가 일어나면 5분 안에 출동했다.

교수도 이런 강압적 학생 통제의 임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학교 당국은 시위가 발생하면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물리적으로 막을 것을 강요하였고, 분담지도교수제를 실시하여 교수에게 요주의 학생들의 동태를 보고하게 하고 가정방문과 면담을 강요하였다. “보직교수만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는 사고를 지양하고 전 교수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담당”하며, 특히 “지도교수가 분담하는 일단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지도한다든가, 서클, 동문회, 동향회를 주기적으로 집단 지도”하는 것이 당시 학생지도의 모범방

안이었다(이기훈 2005, 470).

1977년 김병걸, 김찬국, 상내운 등이 해직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교수 13명이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했다. 1978년 6월 전남대의 송기숙 등 11명이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을 발표했다. 이렇게 1977년 교육법 제75조를 개정해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한 시기는 유신독재 반대 투쟁과 이를 탄압하는 여러 조치가 겹치는 매우 엄혹한 시기였다.

다음으로 교육법 제75조의 개정 경과이다.

유신독재는 1977. 10. 24.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안(의안번호 090767)으로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교원의 범주에서 강사를 빼고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와 조교를 둔다"는 개정안을 당시 문공위원회에 발의 제출했다. 정부의안은 총무처 경제기획원 법무부와 합의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공위원회 법사위원회는 이론 없이 원안대로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는 12월 31일 공포했다.²⁾

이후 1981년 국보위는 졸업정원제를 도입하면서 강사의 직업화가 고착되었다. 1980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학시위를 막고 민심을 수습하려 과외금지, 대학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1981~1987)의 실시와 같은 7·30 교육개혁 조치로 대학정원을 늘리고 정원의 130%를 신입생으로 뽑았다. 그러면서 시간강사 3명을 정규직 교수 1명으로 쳐주면서 대학 강사 수도 대폭 늘었다. 1996년부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법제화해 최소 법정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허용하면서 대학생 수가 증가했다(이종래 2004, 132). 이에 따라 시간강사 수도 더 늘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유연노동 개념과 비정규교수 제도가 결합해 확

2)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09767, 제안일자 1977-10-24, 제안자 정부, 공포일자 1977-12-31, 공포번호 3054.

산되었다. IMF 사태 뒤 유연노동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 강사, 비정규교수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당연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대학에게나 대학 강사 당사자에게나 사회적으로나 약간의 시간강의료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대학 강사는 (거의) 공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지금의 대학은 시간강사의 희생과 초과착취를 바탕으로 세운 거대한 ‘시간강사탑’이다.

1997년 12월 13일 교육법을 폐지하고 같은 날 고등교육법을 제정하는데 14조 2항에서 “교원은 전임강사에 한정하고 17조에 시간강사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동 법에 시간강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시행령 제7조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로 할 때’ 위촉 또는 임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적었다. 이 때문에 2001년 4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대책’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시간강사는 “특수한 교과목 운영, 담당교수 휴직 및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일반 교과과정에 시간강사를 제한 없이 쓰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는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부여를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확대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강사를 간접 지원했다. 이 연구비를 받는 시간강사는 연간 3천여 명으로 추산하며, 이들이 받는 연구비는 생계비 성격이 강하다. 2003년 서울대 러시아어과 백준희 비정규교수는 자신의 전공이나 지향과 다른 프로젝트의 주문생산에 매인 자신의 처지를 “유리상자”라 비유해 비판하며 자살했다(MBC TV PD수첩).

노무현 정부 역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대학교육 개혁의 핵심을 놓쳤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비정규교수의 고용을 일반화했다. 또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삼는다’고 하여 대학 강사의 40%나 되는 박사 학위를 가진 강사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2008년 현재 시간강사가 72,419명으로 전임교원 58,819명보다 많아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의 55.2%를 차지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08. 9. 10). 강의교수·연구교수·비정년트랙을 더하면 13만 5천여 명으로 3분의 2 수준이 된다. 대학 강사 가운데 60%가 전업강사로, 강사는 거쳐가는 수련 과정이 아니라 독립적인 교수노동 계층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대학은 비정규 교수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2008년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한 대학자율화 2단계 추진 과제에서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은 빠졌다. 현행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교원 범주에서 전임강사를 빼서 조교수로 통합했다. 그리고 승진 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는데, 유능한 교수에게 바로 정교수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학은 이러한 유연한 승진제도를 악용해 교수의 승진 연한을 늦추어 전임 교수의 전면적인 비교원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자 교과부와 한나라당 임해규 교과위원장 한나라당 간사는 4대보험과 시간강의료를 약간 인상하는 미봉책을 시도하려 한다(교수신문 2009. 4. 20).

2) 비정규교수 제도의 부정적 영향

대학 강사에게서 교원지위를 박탈한 것은 유신정권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교원지위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 교수의 연구 강의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연세춘추 2008. 5. 19).

시간강사의 연구실, 학습지도실의 부재는 대학생의 수업권(윤수인 2003, 53), 학습권을 침해한다. 또 현재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학점 관리에 치중하는데 수업 역시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나 정답 찾기 위주로 진행된다.

2008년 봄 광우병 사태에서 여중생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촛불을 들

었는데 같은 시간에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윈디걸스 공연을 서로 가까이에서 보려다 밀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학생은 대체로 뒤늦게 참여했다. 대학생이 취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여중생이나 고3학생보다 더 바쁜 것은 아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입시 이전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비판 기능을 상실한 대학에 들어와 교육을 받으며 현실을 배우지 못해 주체적인 인식이 약하다.

학생운동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민중계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선도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학생운동은 이를 상실했다. 사회운동의 주축이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다시 사회운동 대중으로 넘어가는 경향과 아울러 비정규교수 제도의 영향으로 대학의 비판기능과 저항정신의 제거에도 한몫을 했다.

사회와 기업은 대학을 나온 노동자가 창의성·주체성이 약하다고 비판한다. 최근 초·중등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간형을 키우려고 애쓴다. 대안학교도 많이 늘었다.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이들 창의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갈고 닦아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가 법적 신분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현실을 비판하는 관점을 가지고 연구·강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강사가 경영학·사회학에서 삼성노동조합, 경제학에서 분배와 내수, 정치학·철학·법학에서 국가보안법, 교육학에서 대학생의 수업권 학습권, 언론학에서 언론자유, 행정학에서 공권력, 건축학에서 개발, 생명공학에서 생명윤리, 화공학에서 용산참사를 강의 주제로 삼아 강의하고 비판 토론할 경우 학생들은 기본 지식과 그것의 현실 적용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강사는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하고 강의를 준 전임교수는 기업의 프로젝트와 책임용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강사가 강의실에서 질문·대답·토론·비판·대화·세미나식 수업을 기피하고 일방적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수법을 버리지 못한다.

석·박사생의 전망이 불안정하다. 대학생은 과거에는 학문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학원에 무조건 진학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학문 연결 세대가 단절된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들은 2008년 4, 5월에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유기홍 의원 지구당사 앞에서 일인시위한 데 이어, 2008년 10월부터 교과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원을 무조건 가서 박사가 되어 자살하거나 무조건 안 가서 학문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을 나와 안정된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자녀 대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회적으로 노후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녀의 원만한 경제생활이 부모의 노후대책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대학교육 부실은 부모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교수는 교육자이면서 노동자다. 교원지위 없는 비정규교수제도는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 교원 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제도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자 가운데 대학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가 유일하게 교원 지위가 없다.

학생들은 강의의 절반을 비정규교수에게 듣고 학점의 절반을 비정규교수에게 평가받고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한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는 교원지위가 없으면서 강의 개설권, 대학평의회 참여권 등이 없다.

비정규교수제도는 '같은 노동 같은 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며 '가르치는 자의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 비정규교수의 노동권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특수법인 고등교육법의 대상이다. 비정규교수가 교원이 아니므로 대학에서 받은 시간강의료 역시 교원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강의료는 교원보수가 아니고 15시간 이내의 단시간 노동이라면서 퇴직금 지불을 거부했으나, 2003년 고법에서는 비정규 교수의 강의 시간을 강의준비(1), 학생 지도 평가(1)를 더해 3배의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단시

간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서울공대에서 화학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나 산재보험이 안 돼 근로복지공단이 대학에 산재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고려대, 한양대 등 55개 대학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대법원은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 판결문 2007. 4. 5).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보호법에서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비정규직 고용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지만 여기서도 박사는 전문가로 들어가 제외했다. 이런 노동조건은 가사도우미나 이주노동자보다 낫다고 하기 어렵다. 이것은 교수노동자를 국민 일반으로 여기지 않는(손호철 2008.10.20) 노동 인권 침해다.

이런 참담함에 1998년 이후 국민대 아무개(미상), 경북대 서보임, 서울대 3명(백준희·권기록·아무개), 부산대 김(남?) 아무개·건국대 한경선 등 7명이 자살했다. 원광대 아무개 강사는 비정규교수 생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하여 무기징역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이다. 신문에는 대학 강사가 생활비를 구하려고 사기를 쳤다는 보도도 나온다. ‘죽은 대학 강사의 사회’(김상일 2008.4.17)다.

현재 국가와 대학이 담합하여 비정규교수가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는 최저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학문 자유를 침해한다(이광주 1997, 376). 대학생들은 시간강사를 해봐야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현실을 보고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진학을 기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학을 나온 뒤 다시 치·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 KAIST 출신의 7.7%가 고용불안을 이유로 치·의학대학원으로 진학한다(경향신문, 2008. 10. 10).

교수노동 지식노동 시장의 구조를 왜곡한다. 상품생산을 OEM 체제로 생산하는 개발독재 시기의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인력·기술·기계를 외국에서 한국에 들여와 경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 각국은 고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므로 한국이 외국의 고급인력을 들여오기 어렵다. 결국 국내에서 주체적 학문 내용과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수노동을 희망하는 학생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 등에서 박사학위를 마치며, 현재 전임교수 가운데 미국 박사가 주류이다. 교수를 미국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을 위주로 임용하면서 학문이 국내 사정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대학과 교육 당국이 진심으로 합리적인 교원 수급 정책과 '수입학'을 벗어난 주체적인 한국 학문(자생적) 정책을 취하고자 한다면, 마치 영화계의 스크린 쿼터 제도와 비슷하게 일정한 수준에서 '국내 박사 우대제도'를 취해야 마땅하다(이명원 2009). 또 대학부패 구조를 조장한다. 한경선 박사는 「유서」에서 전임교수 임용에서 학문적 능력 외에 학벌·인맥·경제적 능력 등이 작용하는 현실을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직접 들어 죽음으로 비판했다.

2008년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각국 경쟁력 평가에서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2007년 대학진학률 82.8%)은 세계 4위지만 대학 교육이 경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느냐의 평가는 세계 5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싱가포르의 대학교육 순위는 1위,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15위권이다.

비정규교수제도는 학문연구에서 다양성을 해친다. 예를 들어 동북공정, 독도, 아프카니스탄 사태와 같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끌어 모아 대책을 세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프로젝트 주문 생산에 매달리고 비정규교수들은 강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므로 특수한 분야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기 어렵다. 마치 유기적 순환이 파괴된 생태계와 흡사하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자신의 세부전공과 무관한 강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세부 전공지식이 교수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매학기 새로운 강의에 적응해야 한다. 비정규교수들이 교원지위와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장받는다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연구하다가 그 분야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경우 평소의 연구를 공개해

바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현 구조는 지역학문을 고사시킨다.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서울에서 먼 지역에서는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진학 비율이 낮다. 지역 자체의 학문 연결 구조가 무너졌다. 이런 구조 아래 지역대학에서 40대 이상의 시간강사가 갖는 강의부담은 크다.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40시간까지 강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 지역 출신의 강사는 오랜 동안 강의해도 교원 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역 아무 대학 사학과에서는 2008년 전임교수 임용에서 25년 동안 강의한 아무대 출신의 시간강사가 탈락했다. 아무대 사학과와 전임교수 5명 모두가 외지 출신으로 서울대 출신 3명, 서강대 출신 2명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임교수가 지도한 석·박사보다 자신을 전임교수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한 인맥·학벌 등의 배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지역 아무 대학 아무개 비정규교수의 말 2009. 3. 21).

목포대의 박정석 교수는 “지역연구자가 생활비를 벌려고 낮은 시간강의료로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하므로 학문적으로 성숙하기 어렵고 또 수도권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독차지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정규직 교수는 지역대학에서 경력을 쌓아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진입하면서 학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박정석 2009). 지역학문의 붕괴는 10, 20년 뒤 지역 공동체를 운영할 인재를 키우지 못해,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3) 세계적으로 특이한 제도

한국의 비정규교수제도는 대학사회의 친일잔재, 유신독재의 국가폭력, 재벌의 대학 지배, 신자유주의의 교수노동관이 결합한 세계적으로 특이한 후진적인 제도이다.

미국의 교원제도 및 강사제도는 Tenure-Track 정년보장 교원과 Non

Tenure-Track 비정년 계열 교원을 구분하지만, 정년보장 계열과 비정년 계열 교원은 계약형태상의 구분일 뿐 전임교원 여부와 일치하지 않는다. 전임 교원의 직급에는 교수(Professor),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전임강사(Instructor), 시간강사(Lecturer)가 있는 것처럼 비전업(Part-time) 교원도 이와 같은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시간강사는 미국 대학의 비전업 계열 중에서도 직급상 Part-time Lecturer에 해당한다. 미국의 비전임교원 중 박사학위 취득자가 13.4%에 불과하며, 그 중 한국의 시간강사에 해당하는 Part-time Lecturer는 11.2%에 불과하다. 이를 정리해보면, 미국 대학의 교원임용제도에는 우리나라의 비정규교수의 상황과 비교할 그룹이 없다. 이는 최저 연봉을 10,000\$로 잡고 있는 기본임금에서도 설명된다.

독일에서는 교원 임용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 교수자격 획득 시험) 과정을 거쳐야 사강사(Privat Dozent)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이 6~8년 걸리기 때문에 학문후속세대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2002년 주니어 교수 제도를 도입해 우수인력의 해외유출과 이직을 막는다. 주니어 교수는 임기제이다.

프랑스는 박사학위자를 정부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학술 기관인 CNRS(L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국립학술원)에서 총괄 관리한다.

일본의 대학교원의 종류로는 교수, 조교수, 조수, 상근강사, 비상근강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강사에 해당되는 일본의 비상근 강사는 교원의 범주에 속한다. 비상근강사는 다시 전업과 겸업 비상근 강사로 구분된다. 일본의 강사들은 강의시수가 많고 한 강좌가 1, 2학기로 분리된 경우가 많아 한 강좌를 담당할 경우 1년간의 강의가 확보된다. 조교수와 강사 간의 급여 차이도 우리나라만큼 심하지 않다. 일본은 비상근강사조합과 문부과학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강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처우를 개선한다(진일상 2008, 103-118; 임정기

2009; 박광주 2009; 신준식 2009).

가쓰히코 사토(Katsuhiko Sato) 국제공공서비스노동조합(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아태지역조직 사무총장은 “한국의 비정규교수제도는 세계적으로 특이한(unique) 후진적인 제도이다. 오직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 체제 아래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며, 필리핀의 경우가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고 했다.³⁾ 교과부와 대학이 부끄럽게 여겨 자성해야 하는 대목이다.

3.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 운동

1) 1988년 이후 비정규노조의 활동과 교원지위 회복 노력

대학 시간강사들은 자구책으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다음해인 1988년 8월 3일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 및 사회와 교육 민주화’를 목표로 고대 강당에서 전국대학강사협의회를 발족했다. 1990년 4월 28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초대 위원장 조재희)을 서울대에서 26개교 105명이 참석해 설립하고, 1994년 7월 19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다. 시간강사 외의 비정규교수 형태가 늘어나면서 2002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으로 전환했다.

현재 노조가 결성된 9개 대학 가운데 단체협약을 맺는 분회는 영남대, 경북대, 대구대, 전남대, 조선대, 성공회대, 부산대의 7곳이며, 고대는 아직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고, 성균관대는 노사협약을 맺는다.

시간강의료는 최저생계비 수준(2인 가구 784천 원, 4인 가구 1,266천 원)

3) 2009년 2월 25일 민주노총에서.

에 미치지 못한다. 2008년 최대 5만 5,000원, 최저 1만 7,000원이다. 국립대학은 평균 4만 3,000원, 사립대학은 3만 4,000원이다. 비정규교수의 강의를 한 강좌로 제한하는 서울의 몇몇 대학은 연 시간강의료가 500만 원, 400만 원 이하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주 4.2시간을 강의하여 연 시간강의료 487.5만 원을 받는다. 또 시간 강사의 계약 기간은 6개월 이내가 88.3%에 달한다(교과부 2008).

비정규교수는 1988년 전강노 시기부터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2006~7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현행 비교원 ‘시간강사’를 교원인 ‘대학강사’로,⁴⁾ 열린우리당 이상민⁵⁾ 의원은 교원인 ‘연구교수’로, 한나라당 이주호⁶⁾ 의원은 교원인 ‘강사’로 바꾸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기 대표 발의했다. 최순영, 이상민 의원 안은 선 교원지위 회복(후 예산 마련)을 요구하고, 이주호 의원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주호 안은 전임강사에게 국립대 전임강사 연봉 초임의 절반에 해당하는 2,250만 원을 지불하고, 당시 강의료와 차이를 국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50%를 국고로 보조할 경우 연간 4,617억 원(2008)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액수는 학진, NURI사업, BK21, 인문한국(HK)의 전체 예산 연 3조 2,500억 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2009년 2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이공청회와 2008년 12월 12일 교과위의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용섭은 “먼저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예산문제는 부칙을 두어 1, 2년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김용섭 2008. 2. 15).

17대 회기 종료(5. 31)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인 2월 27일 한경선 박

4)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 2004. 8.

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93, 2006. 6. 16.

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609, 2007. 5. 15.

사가 자살해 비정규교수 문제가 사회 의제로 대두했다. 그러나 법안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로비에 밀려 폐기됐다(KBS 2TV 추적60분).

비정규교수의 법 개정 추진 전술은 이전에는 성명서,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실효성이 적었다. 국회의원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후원금이나 상당한 수의 집회 인원 즉 당선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표수가 영향력을 미친다. 반대로 국회의원은 손해를 보아야 움직인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쟁역량이 미약한 비정규교수는 전술을 바꾸어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지구당사, 청와대, 대교협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다. 이 싸움에 비정규교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부천·시흥·김포 민주노총, 부천 전교조, 부천민중연대, 부천 시민연대, 전국일반노조, 민주노동당 부산 사상지구당 등이 참여했다. 2009년 3월 6일 영남대분회가 한나라당 대구시당사(위원장 서상기 교과위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지구당사 앞 일인시위는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대학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지구당사 앞에서 7개월 동안 일인시위를 했으며, 총선에서 권철현 위원장은 낙천, 유기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000여 표 차이로 낙선했다.

18대에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14조 2항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 및 연구교수(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말한다)”로 하고, 제17조 중 “겸임교수·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겸임교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재발의했다.⁷⁾

2009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교과위는 고등교육 예산 증액 1조 원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민(대표) 발의) 의안번호 87, 2008. 8. 11.

가운데 1,500억 원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의결했으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고등교육법에서 시간강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강의교수, 비정년트랙 등 비정규교수들도 신분 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청강문화산업대의 안태성 교수는 전임교원으로 학과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학교는 강의전담교수로 발령냈다. 안태성은 법원에 교원지위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은 강의전담교수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원이 아니라 헌법 제31조 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서울행정법원 2008. 1. 13)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7년부터 서울대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간강사를 '연봉제 강의교수'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나(대학신문 2009. 3. 8), 이것 역시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교원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08. 1. 13).

비정년트랙은 연봉을 받고 연구실을 배정받는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이 아니며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교수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고 총장선출권이 없다. 계약기간이 2~3년인데 재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재계약을 하더라도 횡수를 제한한다. 이런 상태에서 비정년트랙이 재계약과 전임 교원화를 요구한다. 그 결과 비정년트랙교원이 전임강사로만 신규임용, 재임용되는 경우도 있고(상지대), 겸임교원이나 시간강사 등과 달리 처음부터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의 직급을 부여받아 신규 임용되기도 하고, 승진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연세대, 영산대 등)(송병춘 2009).

2008년 2월 서울대 불문과 이무개 강사와 환경선 박사의 자살은 대학생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대학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한다. 과거처럼 대학원에 무조건 갈 경우 위의 희생자 같은 모습이 되고, 무조건 진학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학문 의지와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학생, 경남대 대학원생 등이 유기홍 의원 지구당사, 국회, 교과부 앞 등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일인시위에 참여했다.

비정규교수, 부산외국어대 이광수 교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서양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는 쪽광고를 한겨레에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게재했다.

대학생과 학부모가 대학교육 살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울대생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송환웅 당시 언론홍보위원장이 일인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싸이월드 클럽 '비정규직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들(club.cyworld.com/parttimelecturer)' 을 열어 소통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데까지만 관심을 갖고 비정규교수제도의 문제점을 잘 모르나, 최근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시작한 386세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교조 교원특위는 「고등교육법 개정 투쟁 소식지」를 발간해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6,000여 명에게 보낸다. 촛불시위 이후 네티즌들이 대학 강사 문제에 주목하여 2008년 6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농성 천막 앞에 모여 국회신문고 여의도수요촛불문화제를 열고 Afreeca 인터넷방송으로 중계했다(이강욱 2009). 네티즌들도 다음아고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2) 교원지위 회복 투쟁의 한계

교원 아닌 대학 강사 제도가 32년 되면서 대학 강사는 대학에서 자신의 의견도 요구도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굳어졌다. 연령이 개인차가 있으나 대개 30대 말 40대 초반에 교수시장에 나오는 특성상 재교육이나 전직도 어려운 것이 큰 몫을 한다.

먼저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비정규교수들의 조직이나 활동 역시 한계가 있다.

교수노동이 분산 개별적 노동이고 대학의 교수를 통한 간접통제도 단결을 어렵게 한다. 비정규교수는 13만 5천여 명이지만 집회를 열어도 모이는

인원이 10여 명에 불과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 결과 대학 강사는 강사자리를 유지하고 전임교수로 임용되려면 조용히 있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졸업생의 전임교수 임용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서 노조 조직과 투쟁을 기피하고 법 개정 투쟁에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진일상 2008, 98). 비정년트랙 역시 ‘교수’라는 허위의식을 갖고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원지위 회복 투쟁이 대학교육의 큰 틀을 바꾸어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학문의 길이라는 인식이 취약하다.

특히 전국강사노동조합부터 20년의 역사를 가진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이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투쟁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만은 아니다. 한교조는 2007년 9월 7일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지만 아무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일부 분회는 같은 해 12월 8일 농성 천막을 접으며 투쟁 대열에서 이탈하고 법 개정 투쟁에 할당된 교원특위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12·19대선을 며칠 앞두고 다음해 4·19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으로 대선을 치루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한 표가 아쉬운 순간이었다. 비정규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지위 회복의 좋은 기회였다. 그 뒤 농성 천막은 교원특위를 중심으로 영남대 분회 고대분회가 지켰다.

2008년 5월 31일 한교조 정기대의원대회는 2007년 12월 8일~2008년 5월 31일 사이 교원특위 천막농성 투쟁의 정당성을 32:15로 재확인했다. 또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10%인 특위예산에 위 기간에 들어간 비용을 더해 1,908만 원을 배정했다(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08. 5. 31, 11). 그리고 아무개 위원장의 김동애 특위장 ‘해고(해임)’는 무효라고 결의하고 아무개 위원장이 사과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5·31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2009년 4월 현재까지 텐트(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천막이 텐트로 바뀜) 농성은 영남대분회, 고대분회 교원특위장의 인적·물적 부담과 후원금으로 유지했다.

한편 2009년 3월 21일 한교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동 중앙위원회는 특위장의 임기는 위원장 임기와 같이 한다며 특위장을 해임하고,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영남대분회, 고대분회의 대의원 숫자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교조 감사는 2008년 5월 31일 대의원대회 뒤에 영남대분회를 특별감사를 한 뒤 2008년 12월 8일 이후 영남대분회가 교원특위 운영에 사용한 비용을 특위분담금(조합비의 10%)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넘는 액수는 영남대분회에게 지급하라고 지적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집행부가 2008년에도 특위예산을 집행하지 않다가 3·21 대의원대회 일주일 전에 예산의 2/3를 집행하자, 감사는 “현재 감사에게 제출된 자료는 2008년도 사업계획과 활동보고 자료는 전혀 없이, 재정의 사용내역뿐이다. 위원장 사무총장의 활동비는 지급하면서도 … 특위예산을 집행하지 않다가 대대 며칠 전에 일부 예산을 집행하는 특위를 골탕먹이는 방식의 예산 집행”과 (이에 따른 영남대 고대분회 대표성 부정과 관련하여)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감사 의견을 제출했다(서원식·이경숙 2009. 3. 21). 그러나 집행부는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교원특위 영남대, 고대분회를 배제한 채 3·21 반쪽짜리 대의원대회를 강행하여 감사보고 없이 아무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노조의 다수 간부가 교원지위회복 투쟁을 실제로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

다음으로 정규직 교수나 교수단체 역시 우리 사회 대학 구조 안에서 비정규교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간섭과 지도’ 형태로 접근하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한교조 집행부 내부의 동의절차 없이 아무개 한교조 위원장을 개인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2월 1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교원특위와 분회들을 배제한 채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는 민교협 사무실에서 투쟁에서 이탈한 한교조 위원장 등만을 참석시켜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홈페이지 2008. 10. 11) ‘비정규교수대책협

의회'를 구성하고 아무개 교수를 대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교원특위 영남대분회, 고대분회 등이 항의해 정식으로 발족식을 갖지는 못했다(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2008). 2008년 4월 22일 민교협·교수노조·한국대학교육연구소 대표들이 한교조 아무개 위원장, 성균관대 아무개 분회장을 앞세워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집행간부단 면담'(민주당 공식블로그 2008. 10. 16)에 참석했다. 이어 한교조 아무개 위원장과 함께 교수단체들이 중재하겠다고 텐트 농성장에 몰려왔으나 진입에 실패했다.

전임교수 가운데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실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다. 현재 전임/비전임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은 교원 지위의 유/무이고, 다음으로 연간 임금(실체는 일용잡급직에 지급하는 시간강의료)은 10배(10~20%)나 차별한다. 수도권 아무 대학은 재단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임교원이 연봉 1억 4천만 원, 시간강사는 768만 원이다. 전체 시간강의료는 1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 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 이 대학의 A 캠퍼스는 전임교원 1인이 강사 1.5인을 거느리고, B캠퍼스는 2.5인을 거느린다. 이런 구조에서 전임교원과 그의 소개를 받아 강의하는 시간강사 사이에는 봉건적 신분 관계가 형성된다.

전임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강사제도는 전임교수의 고액 연봉을 가능하게 하고 전임 자리를 보장하는 장치이다(이광수 2009). 또 시간강사제도는 대학원을 마친 석·박사의 강의를 단기간이지만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학원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한다.

전임교수는 비정규교수와 임금 삭감 등 권리 나누기를 거부한다(정기오 2006, 125). 또 전임교수 상당 부분이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반감을 표한다. 또 조직적으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수노조, 민교협은 비정규교수노조에 대해 전임교수-시간강사의 봉건적 관계를 확장하여 영향권 아래 두려 하며 한교조의 조합주의화 또는 무력화 현상을 조장한다. 이들은 일인 시위나 천막농성은 대학교수의 '품위'에 어긋나므로 성명서, 기자회견이나

서명운동 같은 방법으로만 싸우라고 한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노조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여론의 주목이 어려우며, 이것은 교수노조 합법화 추진의 지체에서도 드러난다.

비정규교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 등 학계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연구하지 않는다(정성기 2003). 이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경우 대학 안에서,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연구비 배정과 임용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자본의 저지나 불가피한 충돌 지점에서 대응 역시 한계가 있다.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자본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막으려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다. 대학자본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을 살려 질 높은 졸업생을 배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 일반의 요구는 대학을 거느린 몇몇 재벌의 거대한 대학자본의 그늘에 묻혀버린다. 또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대학 강사 문제나 고한경선 비정규교수의 희생 소식을 보도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정규교수가 노조활동을 할 경우 노조 간부 상당 부분이 상근을 선호한다. 대부분 노조에서 상근자에게 조합비와 대학의 보조로 마련하는 고충처리비 등 상근비를 지급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투쟁비보다 해외여행 비용이나 세미나 비용으로 쓴다. 대학입장에서 보면 노조에게 약간의 보조비를 주어 회유하는 것이 교원지위 회복이나 생활급에 상당하는 시간강의료의 인상보다 적게 들어간다.

과거에는 투쟁 성향을 가진 시간강사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은 활동이 활발한 노조 간부에게 전임, 비정년트랙으로 발령낸다. 2008~9년 국회 앞 천막농성에 참여한 8명(전임 위원장 1명, 현직 분회장 4명 등)에게 비정년트랙(6명)이나 전임교수(2명)로 발령냈다. 계약조건에 노조활동을 금지하는데, 약자의 단결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계약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조합주의 관료주의의 팽배와 노조 교섭력 법개정 투쟁력의 무력화로 나타난다.

전강노 시기에는 노조 책임자가 전임이 되면서 노조가 무너진 사례로서 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남대, 계명대, 부산대 등이 있다. 이렇게 간부층이 약화되어 투쟁을 중단하고, 비정규교수의 기대와 신뢰를 상실하면서 비정규교수노조의 투쟁력은 타격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대체로 4, 5년 단위로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비정규교수제도는 뿌리를 더 깊이 했다.

대교협은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완강하게 반대한다. 17대 국회에서 대교협과 한기총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교육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로비하였다. 최순영 교육위원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하거나 심지어 시아버지에게까지 로비를 시도하더라” 고 했다(KBS 2TV 추적60분). 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12월 12일 공청회에서 대교협의 이영호 정책연구부장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 충원율을 100% 채우되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가로막는 데 삼성의 역할을 주목한다. 삼성은 자신과 직접 관련 있는 노동자는 물론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부정한다. 삼성은 비정규교수노조 역시 부정한다. 삼성이 경영하는 성균관대는 강의연한제를 만들어 역대 분회장 7명에게 강의를 주지 않는 식으로 노조를 무력화했다. 또 성균관대는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성균관대분회와 기업별 노사협의회를 열어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협약을 체결한다. 다른 대학 분회는 전국 차원에서 대각선으로 산업별 교섭을 하고 위원장이 최종 타결한다. 또 성균관대의 학부, 대학원생, 전임교수는 대외적으로 대학 강사의 교권을 말하거나 쓰지 않는다. 대학신문, 대학원신문, 대학방송도 마찬가지다.

박승철 성균관대 교무처장은 대학을 대표하여 2월 15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15 약식공청회와 4월 16일 KBS 2TV, 추적60분 「엘리트 여강사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에서 “대학강사는 검증이 안 되었다. 교원지위는 절대 불가하다. 교원 하나를 쓰는 데 연간 2억 원이 들어간다. 2억 원짜리 철밥통 7만 개를 만들 돈이 없다” 고 했다(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록, 2008. 2. 15). 그는 2008년 12월 12일 공청회에서도 비슷하게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는 특수법인 고등교육법의 교원이 아닌 상태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비정규교수가 ‘근로자’라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구속력이 미약하다.

2003년 10월 30일 서울지법은 한성대 김동애 강사(대우교수)가 한성대를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요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서울지방법원 제6 민사부 판결 2003. 10. 30). 이때 재판부는 대학강의 1시간을 준비, 강의, 학생지도를 인정해 3배수로 인정했다. 5시간 강의하면 15시간으로 인정하므로 근기법상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우려해 상고하지 않아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진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6. 2).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세대, 고려대 등 55개 사립대학교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대학 강사도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 판결문 2007. 4. 5).

그러나 2007년 비정규보호법에서 박사인 시간강사는 전문직이라 하여 2년 고용 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8년 6월 교과부가 대학 강사의 4대보험을 재정 지원으로 시행하자고 노동부에게 제안했으나, 노동부는 노동자 일반에 견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2008년 경북대분회, 전남대분회 등이 비정규교수의 처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벗어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고등교육법 내 전임교수와 법외 강사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4. 대학교육 정상화를 막는 트라이앵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 저지 구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거부하는 대학-국회-교과부의 트라이앵글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한다. 대학은 자체의 예산 즉 등록금, 적립금, 재단 전입금, 기부금, 정부의 교부금 등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은 재정난을 말하지만 사립대학은 적립금이 많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2007년)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7조 2,996억 원이다. 대학은 매년 건물을 지으며,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제2, 3의 캠퍼스를 추진한다.

17대 국회에서 이주호 의원이 국고 부담으로 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대학은 이조차 거부해 폐기되었다.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대학의 속내는 비정규교수가 교원이 되어 대학평의회 등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와 대학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국회 교과위 2008. 12. 12). 정부의 대학 지원예산의 증액이나 고등교육세의 신설은 그 다음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대학 강사 문제의 존재는 알지만 그 본질까지 알아 대학의 압력과 로비를 물리치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 앞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국회의원들은 돈이든 표든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대학 강사들은 이를 충족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정당 사이의 딜(deal)에서도 비정규교수 문제는 배제됐다.

16대 국회 이전에는 대학이사장 출신 의원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교육입법에 직접 개입했다. 17대 국회에는 대학이사장 출신이 아

닌 의원들이 교육위를 구성했다.

17대 국회에서 법안을 3당이 각기 발의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위원들은 강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이론이 없으면서도 교육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2008. 2. 15).

교과부는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문제에서 “안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교과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면에는 대학교수가 교과부의 장관 등 고위관료가 되고, 이들은 다시 대학 총·학장 등이 되는 회전문 인사구조가 있다. 아무개 비정규교수는 B대에서 27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해 학교에게 퇴직금 3,000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학교는 이를 근거 없다며 거부했다(아무개 비정규교수의 말 2008. 2). 이를 방어한 학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출신이다. S대의 K교수는 교과부 장관을 거쳐 U대 총장으로, U 전 교과부 차관은 K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5. 대학교육 살리는 대중운동으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은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삼성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더불어 장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3대 과제이다. 비정규교수 문제는 학문의 자유, 국가보안법은 생각의 자유와 창의성, 삼성의 노동조합 활동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 요소이다.

첫째, 대학에서 주인은 이사장이나 총장이 아니라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시간강사는 일용잡급직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절반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노동의 주체다. 대학생은 대학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변화해 사회에 나갈 수 있는가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강사는 현행 비정규교수제도 아래에서는 현실에 기초한 연구와 강의를 하기 어렵다. 강의의 질은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전임교수가 독자적으로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원지위 회복이 대학교육 살리기의 핵심이지만, 시간강사는 국회의원을 움직일 정도의 로비력—돈도 없고 집회력도 없다. 집회를 해봐야 10명을 넘기기 어렵고, 국회 앞 텐트 농성도 참여자가 손가락 꼽을 정도다. 대학은 우습게 알며 국회의원은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교과부는 복지부동의 자세이다.

그래서 17대에는 소수 인원으로도 가능한 국회 앞 천막농성과 교육위원의 지역구 여론에 호소하는 전술을 썼다. 18대에도 국회 앞 텐트 농성, 교과부 앞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대구한나라당 시당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고, 앞으로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 주요 지역 지배 정당의 당사 앞과 교과위원 지구당사 앞의 일인시위가 필요하다.

먼저 대학생은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대학 강사의 교수노동을 바라보아야 한다. 대학생은 대학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의 출발점은 독립적인 강의를 가능하게 하는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대학생이 68혁명에서 대학 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암기 위주의 주입식 강의’를 거부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교수 문제가 대학교육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의 현실이 어떤지를 토론과 비정규교수를 초대하는 설명회, 강연회 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주제는 “학생은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등록금은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생의 수업권, 학습권 그리고 학문의 자유는 어떠한 관계인가?” 등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정규교수들이 2, 3개 대학에 강의를 나가며 신분

도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투쟁력이 약하므로”(교과부 앞 일인시위에 대학생의 참여를 호소하는 대자보 2008. 10. 9)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 투쟁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대학생 사람연대’가 17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 지구당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고, 18대에도 10월 6일부터 교과부 앞 일인시위를 7개월째 계속한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생들은 2008년 11월 4~5일 이틀간 ‘비정규교수와 함께 하는 주점행사’를 열어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많은 대학신문, 대학원신문, 대학방송이 비정규교수 제도의 폐해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이미 고등교육법 개정 문제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이 서로 연결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 전국의 대학생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최고의 교수진이 최고의 교육을 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대학생은 시간강사에게 강의의 절반을 듣고 학점의 절반을 받는다. 대학은 연간 1천여만 원의 등록금을 받지만 그 가운데 얼마가 시간강의료 몫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다. 대학교육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박종주 2009) 비정규교수에게서 학점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 시간강사의 교권과 대우를 말하면 대학은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학생을 위협한다. 교육원가, 강의원가 가운데 대학 강사에게 지불하기로 산정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 그럴 경우 등록금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학부모가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다. 학부모의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학입시와 등록금, 취업에서 그친다. 학부모는 대학이 학생을 왜 주체적·능동적·창의적인 인간으로 키우지 못하느냐는 대학교육의 질 문제로 관심을 심화해야 한다. 자녀가 대학을 나와 사회에서 헤쳐 나갈 수 있는 판단력을 대학에서 배우는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캠퍼스를 방문하고 강의를 참관하고(박덕원 2000, 51),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듯이 대학평의회에도 참여해

야 한다.

셋째, 지식인 언론인이 말, 글, 논문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 이전에도 많은 언론인과 일부 전임교수가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교원지위 회복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사를 썼다. 경향신문 사설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우리 사회가 시급하고도 절실한 교육투자로 봐야 한다”고(경향신문 사설 2008. 9. 19), 한겨레 사설은 “재정이 정 문제라면 교육예산을 확충하고, 사학재단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열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한겨레 사설 2008. 10. 13).

넷째, 전임교수의 반성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교수 문제를 가슴아파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전임교수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가 아니다. 전임교수와 비정규교수는 연구와 강의 그리고 학생의 평가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교원지위, 강의와 연구 교육 조건,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전임교원 임용 여부에서 비롯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유신독재가 지식인을 분할 지배하면서 발생하고 그것이 그 뒤의 운영 과정에서 확대된 데 있다. 대학과 학문의 거시적인 발전과 비정규교수의 교권, 노동권, 인권의 존중 그리고 나눔의 측면에서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격차 줄이기에 접근해야 한다.

교과부 고위 관리가 대학의 학장 총장으로 전직하는 것은, 교과부와 대학을 유착시켜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비롯한 대학개혁을 막는 역할을 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교육 관료의 대학을 비롯한 관계 기구의 전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법적인 노력으로 교과부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교원지위 회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생각한다. 조우영은 「고등교육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2007)에서 현행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등교육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한다(조우영 2007). 그

러나 김종서는 교원지위 회복이 법리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시간강사들이 원하는 결과, 즉 고등교육법 제 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재산권과 같은 자유권에 비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낮게 보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 한다(김종서 20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1977년 교육부 안으로 국회에서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한 것은 국가폭력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섯째, 국제적으로도 한경선 박사의 자살을 계기로 세계 곳곳의 유학생과 교민들이 관심을 가졌다. 다른 나라의 교수, 강사들도 연대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관심이 고등교육법개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정규교수노동의 비인간성, 인권유린을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ILO 등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교수, 전임교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종교단체, 지역사회, 국제사회 등이 비정규교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이 운동에 시간이나 돈이나 몸이나 글을 써서 실천하는 전 국민 전 계층이 참여해 교원지위 회복 싸움을 지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싸움을 이기게 하고 고등교육을 살리는 조직이어야 한다(김동애 2009).

1970년대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 때 회사가 입사를 소개한 친지를 통해 노동자에게 가한 압력을 물리치고 블랙리스트의 위협을 감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했다. 마찬가지로 대학 강사의 교원 회복에는 자기 검열 즉 강사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자기해방이 필요하다. 비정규교수가 개인 차원의 교원지위 획득을 넘어 학문과 대학생의 학습권 회복 그리고 대학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비정규교수 집단의 교원지위 회복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한경선 박사를 ‘지식사회의 전대 일 열사’ 라고 가르쳐야 한다.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정년트랙 모두 대학의 초과차취의 대상이며 교원이 아닌 점에서 비정규교수다. 비정년트랙 계약 때 노조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은 약자에게 강요한 부당한 계약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비정규교수는 자신이 ‘교수’ 라는 허위의식, 패배주의, 자기검열에서 벗어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병운 외. 2004. “대학의 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 대책 연구.” 『교육정책연구』 (37).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대학 시간강사 기본 현황(통계) 분석』, 9. 10.
- 국가인권위원회. 2004. 6. 2.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검토 결정문』.
- 국회 교과위. 2008. 12. 12.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 국회 교육위. 2008. 2. 15.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 김동애 외. 2009.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이후.
- _____. 2002. “비정규직 대학강사의 권리 찾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제74호.
- _____. 2006. “시간강사에게 다시 듣는다-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동애 선생 님 인터뷰.” 『관악』 35호 겨울.
- 김상일. 2008. “대한민국 최고 지식인, ‘대학 시간강사 제도’ 굴레로 생 마감… 정부·국민 무관심도 넘어.” 『대구시민일보』, 4. 17.
- 김용섭. 2008. 『고등교육법개정안(시간강사 처우개선, 이상민·이주호 의원)』 국

- 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의견 청취 관련 진술서』, 2. 15.
- 김중서. 2009. “너무나 간단한 ‘고등교육법’ 의 위헌성.”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 박광주. 2009. “미국 대학엔 있고 한국 대학엔 없는 것.”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박덕원. 2000. 『대학과 학문의 자유』.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박인우. 2008.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박정석. 2009. “끓주리는 시간강사, 말라죽는 ‘지역학문’.”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박종주. 2009.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하자.”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백삼균 외. 1999. “(유능한 인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강사정보은행제 도입 방안 연구.” 교육부.
- 서울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2003. 「사건 2002나55815 퇴직금」, 10. 30.
- 손인수. 1994. 『한국교육운동사』 I, III. 문음사.
- 손호철. 2008.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한국일보』, 10. 20.
- 송병춘. 2009. “비정년 트랙 제도를 들여다보면.”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서원식 · 이경숙. 2009.3.21. “2008년도 업무와 회계에 대한 재감사 통지서.” (한교조홈페이지 www.kipu.or.kr).
- 신정완. 2003.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회보』 제49 · 50호(2003. 6).
- 신준식. 2009 “호주의 비정규 교수에게 지급되는 추가 임금 제도는.”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심경호 외. 2001 “대학의 강사(시간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정책연구』. 2001. 1. 27.
- 윤수인. 2003. 『21세기 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부산대학교출판부.
- 이강욱. 2009. “대학생들이여, 교원 지위 없는 비정규 교수의 학점을 거부하라!”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이광수. 2009. “피로 흥건한 방식에 앉은 듯.”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이광주. 1997. 『대학사』. 민음사.
- 이기훈. 2005. “1970년대 학생 반유신 운동.”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남석. 2004. “대학의 개혁과 비정규직 교수 제도의 새로운 모델.” 『대학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 이명원. 2009. “‘중년 88만 원 세대’의 무너진 자부심.”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이종래. 2004. “대학서열체제와 대학교육: 서열화와 황폐화.” 『대학서열체제 연구: 진단과 대안』. 한울아카데미.
- 이주호. 2006.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2006. 11. 18).
- 임정기. 2009. “일본 비정규교수의 현실.”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 전명혁. 1992. “대학강사의 모순적 지위, 그 현황과 문제점.” 『대학교육』 11·12월호.
- 정기오. 2006. 『대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 정성기. 2003. “대학사회의 시간강사 노동문제와 (정치)경제학·생활 현장의 분열에 대한 성찰.” 경남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제13권 2호(2003. 10).
- 조우영. 2007. “고등교육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10.14).
- 조희연 지음. 2007.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 진일상. 2008. 『인문학 학문 후속 세대의 지위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경선. 2008. 『유서』 (2008. 2. 27).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07.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10. 1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08. 『2008년도 정기 대의원대회 보고 자료』(2008. 5. 3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2008. 『267일 천막농성 보고』 자료집.

홍영경. 2008. 『대학시간강사는 교원이다』(성균관대/성공회대분회 홈페이지 자료실 2008. 10. 17).

KBS 2TV. 2008.4.16. <추적60분> “엘리트 여강사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

MBC TV. 2003.6.10. <PD수첩> “대학의 노예, 시간강사.”

교과부 앞 일인시위에 대학생의 참여를 호소하는 대자보. 2008. 10. 9. <서울대 비정규직교수의 교원지위는 회복되어야 한다>.

대법원 제3부 판결문. 2007.4.5. <사건 2005두13018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2005두13025(병합)>.

서울지방법원 제6 민사부 판결. 2003. 10. 30.<사건 2002나55815 퇴직금>.

서울행정법원. 2008.1.13. <전 청강문화대학 안태성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

『연세춘추』, 2008.5.19. “이대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2008.10.13 사설 “천막농성 400일, 바뀐 건 없는 시간강사들.”

『경향신문』, 2008.9.19 사설 “시간강사 처우개선 외면한 대학자율화.”

투고: 2009.3.23 심사: 2009.3.27 확정: 2009.4.30